

코로나-19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

- 세계보건기구,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-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권고 등 소개
- 사업주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코로나-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자료 활용 권장

❖ 세계보건기구(WHO) 발표 : 코로나-19의 잘못된 진실¹⁾



항생제의 효과성 여부

- » 항생제는 박테리아에만 효과가 있으며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음
- » 코로나-19는 바이러스이므로 항생제를 통한 예방이나 치료는 불가능
- » 단, 코로나-19로 인해 병원치료 중인 경우에는 박테리아에 의한 동시 감염 가능성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음



특정 연령층에 대한 감염성

- » 전 연령층이 코로나-19에 감염될 수 있음
- » 기저질환(천식, 당뇨, 심장병 등)을 가진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-19에 더 취약한 것으로 파악
- » 세계보건기구는 전 연령층의 사람들이 손이나 호흡기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를 권고



마늘 섭취를 통한 감염 예방

- » 마늘은 항균 성분을 가진 건강식품임
- » 하지만 마늘 섭취가 코로나-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증거는 없음

1) 출처 : <https://www.who.int/emergencies/diseases/novel-coronavirus-2019/advice-for-public/myth-busters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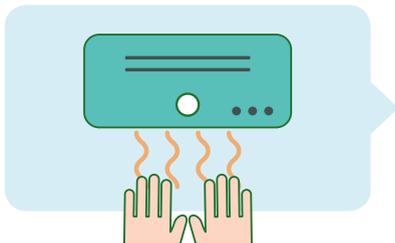
폐렴 예방 접종을 통한 코로나-19 감염 예방

- » 폐렴백신, Hib²⁾백신과 같은 폐렴 예방 접종은 코로나-19 감염을 예방하지 못함
- » 코로나-19는 새로운 바이러스이므로 전용 백신이 필요. 연구자들은 코로나-19 백신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이들의 백신 개발 노력에 지원 중
- » 비록 폐렴 예방 접종이 코로나-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진 않지만, 호흡기 질환에 대한 백신 사용은 권고되고 있음



열 감지기(열상 스캐너)를 통한 감염자 구분 효과성

- » 열상 스캐너는 코로나-19 감염으로 인하여 열이 있는 사람들을(즉, 체온이 보통보다 높은 상황) 감지하는데 효과적임
- » 하지만 코로나-19에 감염이 되었지만 아직 발열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감지할 수 없음. 이는 코로나-19 감염 후 발열까지 수일이 소요되기 때문임



손 건조기를 활용한 코로나-19 바이러스 제거 효과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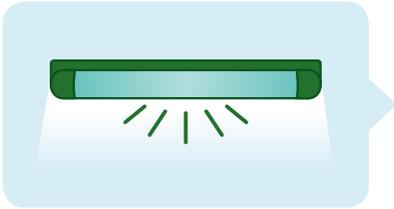
- » 손 건조기는 코로나-19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음
- » 동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콜이 함유된 손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함. 손을 씻은 후 휴지 등을 사용하여 건조 필요



알코올이나 소독약의 전신사용 효과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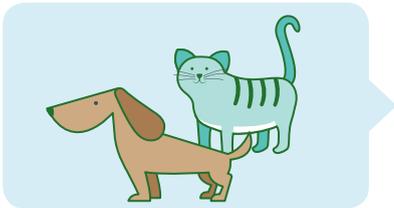
- » 알코올이나 소독약을 전신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몸속에 들어온 코로나-19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함
- » 알코올이나 소독약을 전신에 사용하는 경우 우리 몸의 점막(예 : 눈 또는 입)에 해로우며 의복이 손상될 수도 있음. 알코올이나 소독약은 올바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필요

2)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: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 종



자외선 살균 램프로 코로나-19 바이러스 제거

- » 자외선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살균 램프(UV 램프)를 통한 신체 부위 소독 금지



애완동물을 통한 코로나-19 감염성 여부

- » 현재까지 개 또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또는 애완동물을 통해 사람이 감염된다는 증거는 없음
- » 단, 반려동물·애완동물과 접촉 한 후 손을 비누로 씻는 등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와 같은 흔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예방 필요



코로나-19에 대한 특정 치료제, 예방 의약품 개발 여부

- » 현재까지 코로나-19를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 권고되는 특정 의약품은 없음
- » 단, 코로나-19에 감염자의 경우 적절하고 최적화된 치료가 필요함



참기름, 화학물질*의 피부사용을 통한 코로나-19 감염예방 효과성

- » 참기름의 피부사용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없음. 화학물질의 피부사용의 경우에도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거의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
- * 염소표백 성분 소독제, 에테르 용액, 75% 에탄올, 과산화아세트산 및 클로로폼 등



코 안에 대한 정기적 소금물 세척의 감염 예방 효과성

- » 정기적으로 코 안을 소금물로 세척하는 것이 코로나-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음
- » 단, 정기적으로 코 안을 소금물로 세척하는 경우 일반적인 감기의 증상을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아주 제한적인 증거가 있음.
- » 코 안에 대한 정기적 소금물 세척으로 호흡기 감염예방은 불가능함

❖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³)의 코로나-19 관련 사업장 및 사업주 대응 지침⁴

-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이하 CDC)는 사업장 내 비의료적 환경에서 신종 코로나-19를 포함한 급성 호흡기 질환에 노동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대응 지침을 발표
 - » 코로나-19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방침으로 제공
 - » 사업주에게 직원(노동자)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코로나-19 감염 위험의 판단 시 지침에 따른 것을 권고(인종, 출신국가로 감염위험 판단 배제)
- 사업주 권고사항(사업장 내 노동자 대상)

아픈 직원은 자택에 머무는 것을 적극 권장

- » 급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는 직원은 해열제 또는 대증요법에 사용되는 의약품(예 : 기침 억제제)을 사용하지 않고, 최소 24시간 동안 열(경구 체온계 사용 시 37.8°C 이상), 발열 징후, 기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권고. 증상이 있을 시 직원은 상사에게 알리고 자택에 머물러야 함
- » 병가 등 사내 정책의 융통성, 공중보건 지침 부합 여부 및 직원들의 병가 활용에 대한 인지도부 확인 필요
- » 아픈 직원이 자택에 머무르도록 계약직 또는 임시직 고용방식 논의, 처벌·징계와 무관한 휴가 제공
- » 의료 기관 등의 업무부하 증가를 고려하여 급성 호흡기질환 직원의 질환 확인서 또는 사업장 복귀용 의료인 확인서 등의 요구를 자제
- » 사업주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택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등 융통성 있는 정책의 유지가 필요

사업장 내 유증상자의 분리

- » CDC는 사업장에 급성 호흡기질환 증상(기침, 호흡 곤란 등)이 있는 노동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를 다른 노동자와 분리시키고 즉시 자택으로 보낼 것을 권고. 해당 노동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(휴지가 없는 경우 팔꿈치 또는 어깨)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함



3)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

4) 출처 : <https://www.cdc.gov/coronavirus/2019-ncov/specific-groups/guidance-business-response.html>

질환자의 자택격리 필요성, 기침 예절 및 손 청결 유지에 대해 전 직원에게 강조

- » 질환이 있는 경우 자택에 머물러야 하고, 기침 및 재채기 예절, 손 청결을 장려하는 포스터를 사업장 입구 및 눈에 잘 띄는 여러 곳에 게시
- » 휴지 및 비접촉식 휴지통 제공
- » 직원에게 알코올이 60-95% 포함된 손소독제를 사용하게 하고, 최소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도록 권장. 손이 눈에 띄게 더러운 경우,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우선 세척 필요
- » 사업장에 비누와 물 및 알코올 기반 손세정제를 제공. 소모품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손세정제를 회의실 등 여러 장소에 비치



정기적인 주변 위생 환경 유지

- » 문손잡이 등 사업장 내에서 자주 접촉하는 모든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
- » 청소는 일반적인 세제를 사용하고 허가받은 지시 사항에 따름
- » 현재 정기적 청소 이외의 추가 소독은 권장되지 않음
- » 자주 사용하는 손잡이, 키보드, 리모컨, 책상 등을 사용 전에 닦을 수 있도록 일회용 수건 제공



여행 전 조치 및 권고사항

- » 여행국에 대한 최신지침 및 권고사항 확인(CDC 여행자 건강 알림, CDC's Traveler's Health Notices)
- » 중국 여행 시, 특별 여행 정보 및 항공기 승무원을 위한 정보는 CDC 웹사이트 참조
- » 사업주는 여행 전 직원의 급성 호흡기질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, 유증상 시 상사에게 알리고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
- » 여행 중 또는 출장 중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, 필요 시 질환이 발생한 직원이 의료기관 연락 및 조연을 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
- » 미국 외 지역에서 질환이 발생한 직원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한 회사 정책을 따르거나, 의료진 및 해외 의료 지원 기관에 연락



●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

- » 사업주는 급성 호흡기질환의 확산 감소 및 코로나-19 발생 시 사업장 내 영향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목표로 정하도록 권고



- »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시,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사회의 질병 중증도(예: 유행률, 입원 및 사망률) 및 질병 영향 등의 정보를 취약계층 등 코로나-19 합병증 고위험군 노동자에게 제공
- » 사업장 밀집 지역의 사업주는, 지역의 상태를 고려하여 ‘사업장 감염성 질환 발생 대응 방침’에 요약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지역 관리자에 대한 권한 부여를 권장
- » 모든 사업장은 정보의 적시성·정확성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, 주정부 및 지역 보건 당국과 협조할 것을 적극 권장.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발병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지역 보건 당국은 해당 지역사회에 특화된 지침 발표

● 사업주가 고려해야 하는 기타 사항

- » 방침은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, 해당 방침의 수립 및 검토 시 직원 참여 유도
- » 방침이 현실과 괴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집중 토론 및 방침에 대한 연습 실시
- » 직원들과 방침을 공유하고, 사업장의 인사 관리 정책, 일하는 장소 및 휴가의 유연성, 급여 및 혜택 관련 사항 안내
- » 지역사회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, 다른 사업장(특히 공급망 내 사업장), 상공 회의소 및 협회와 모범 사례 공유

출 처 :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안전보건동향 2020. 2월 제470호

※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. 신청 및 관련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연락바랍니다.